

안전성 증명서

안전인증번호

신청인

업체명

대표자 성명

주소

제품검사 내용

어린이제품명

안전기준상의 모델 구분

제조사 제시 모델명

수량

「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」 제1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제품검사만을 한 결과에 따라 안전성 증명서를 발급합니다.

년 월 일

안전인증기관장

직인